

**[]먹는물 수질검사기관
[]수처리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
[]정수기 성능검사기관**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
			20일
신청인	성명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)	생년월일	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)	전화번호	
사무실 소재지	(전화번호:)		
실험실 소재지	(전화번호:)		
검사대상 및 범위			

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, ○○유역환경청장, ○○지방환경청장 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1.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2.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3.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국가기술자격증 2. 사업자등록증 3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